

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」 제정령안

1. 제정이유

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제78조제5항에서 위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적용 범위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및 목적 규정(제1조)
- 나. 관할구역 간 이동에 따른 교육공무원 선택가산점의 합리적 조정 기준 마련(제2조)
- 다. 종전 관할구역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, 사전 서면동의 의무 마련(제3조)
- 라. 그밖의 세부 사항에 대한 사안별 소관 인사위원회 심의 및 위임 근거 마련(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합의 진행 중
- 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6. 07. 15. ~ 08. 25.)
2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제78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무지가 변경된 교육공무원의 선택가산점 적용)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간 인사교류 등으로 종전의 관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선택가산점을 평정할 때에는 인사교류 등 이전에 취득한 선택가산점 실적을 인사교류 등으로 현재 근무하는 종전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평정기준 및 배점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한다.

제3조(종전 관할구역 간 전보 절차)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78조제1항단서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간 인사교류 등을 할 수 있다.

1. 중요 직무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를 관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

2. 인사교류 등 대상 공무원이 보유한 전문 역량 또는 자격이 특정 관할구역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

3. 그 밖에 교육행정상 필요한 경우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

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8조제1항단서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간 인사교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보 기관, 전보 사유 및 동의 일자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(위임 규정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」 제78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근무지가 변경된 교육공무원의 선택가산점 적용)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간 인사교류 등으로 종전의 관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선택가산점을 평정할 때에는 인사교류 등 이전에 취득한 선택가산점 실적을 인사교류

현행	개정안
	등으로 현재 근무하는 종전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평정기준 및 배점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한다. 제3조(종전 관할구역 간 전보 절차)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78조제1항단서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간 인사교류 등을 할 수 있다. 1. 중요 직무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를 관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. 인사교류 등 대상 공무원이 보유한 전문 역량 또는 자격이 특정 관할구역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. 그 밖에 교육행정상 필요한 경우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현행	개정안
	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은 법 제78조제1항단서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간 인사교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보기관, 전보 사유 및 동의 일자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제4조(위임 규정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.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